

제 384 호

1973. 7. 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대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61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이 일정표준자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 조례

제 785호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설치조례폐지조례 3

제 786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3

◎ 도시

제 110호 도시계획학교 시설결정과 지적승인 31

제 111호 도시계획서장 시설결정과 지적승인 32

제 112호 도시계획시설 (시내매스, 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32

◎ 사령 33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소방제 2조(시세의 의의) ①이 조례중 시
본부설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7월 3일

법령 기타 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
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제 9조의 규정에의한 조례는 따
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시세의 세목) 시세의 세목은 다
음과 같다.

1. 주민세

2. 취득세

3. 자동차세

4. 유흥음식세

5. 도축세

6. 마권세

7. 면허세

8. 재산세

9. 농지세

10. 도시계획세

11. 소방공동시설세

서울특별시조례제 712호(72.5.31) 서울
특별시 소방본부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
특별시 시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7월 3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786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조(파세의 근거)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세목, 파세 객체, 파세 표
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 4조(시세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서울
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
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파세
 객체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 5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① 시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시장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착오되었을 때	고자 하는자는 다음사항과 그연장을 필요로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납기개시전에 과세액체가 소멸되었을 때	②시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그 부과를 경정하여야 한다.
1. 과세액체의 착오가 있을 때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성명 또는 명칭
2. 과세표준의 산정에 착오가 있을 때	2. 소속년도 및 세액
3. 세율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3.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③전 2 항의 경우에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부과를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사유를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과오납금이 있을때에는 별제 45조 내지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연장기간 ④시장은 천재, 지변, 화재, 전화 또는 평정전염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을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 (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 11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기한의 익일부터 2월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그 내용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그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을 받	⑥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 7 조 (가산금) ①시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2) 가산금은 「원」까지 징수하며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8조 (징수유예신청 등) (1) 병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관한 신청서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징수유예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병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병제 3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주민세를 직권으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를 하거나 결정된 주민세를 분할하여 고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 9조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장부비치) 구청장은 시세의 부과 징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 10조 (기부과 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자가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미 부과

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 (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년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 12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보 통 세

제 111 절 주 민 세

제 13조 (납세의무자) ① 주민세는 납기 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내 (이하 시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시내에서 소득세, 범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범인에 대하여 납세자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균등할과 소득세 할을 각각 부과한다.

다만, 범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이를 개인으로 보아 개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조 (비과세의 예외) 구청장은 법 제 70조 제 1항 제 2호 및 령 제 51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자로서 1973년 4월 1일 이후 다른 시, 도로 부터 시내로 주소를 이전한 자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한다.

제 1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법 제 72조 제 1항 제 1호의 균등할의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개인 2,000원

2. 법인 20,000원

②법 제 72조 제 2항의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소득세 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5

2. 범인세 할 범인세액의 100분의 5

3. 농지세 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5

제 16조 (가산세액의 징수) 구청장이 법 제 7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하여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2 절 취득세

제 17조 (납세의무자) ①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와 임목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내에 다른 구청관할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취득물건의 전입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부과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은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법 제 111조 제 2항 및 령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식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식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③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전항 단서의 규정(교환, 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변부금액에 의한다.

1. 국, 도, 시, 군, 시군 조합으로 부터의 취득
2. 정부관리 기업체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
3. 은행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
4.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5. 법인의 장부와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와 기타 증서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6. 전자호 이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④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및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와 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물건의 종류변경에 의한 취득(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건축 또는 구조변경을 한 때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증축, 개축, 지목변경 또는 종류변경으로 일하여

소요 또는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정당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 하므로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 제80조 및 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부과한다.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법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증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증기 및 입목의 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취득한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그 법인의 과세 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의 소재지 또는 등록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의 관할 구청장이 그 가액의 비례에 의하여 각각 부과한다.

⑦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범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항에 규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 18 조 (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낸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령 제 84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외국 산고급승용차, 비업무용 차가용 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전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③령 제 84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 1 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 19 조 (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정하여 그 기한은 15일간으로 한다.

제 20 조 (신고의무) ①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부과대상을 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승방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년월일과 취득의 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
4.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 지적 및 용도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목) 수령(樹齡) 주수, 죽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구조, 종별, 용도 및 면적
7.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청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의 년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년월일과 면허번호

10. 차량과 증기기에 있어서는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준한 사항

11.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2.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13. 기타 참고사항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광업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서울특별시와 인접도에 걸치는 때에는 제 1항에 규정한 신고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와 당해 도의 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 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기하고 그 공사설계서, 공사비용 명세서 및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 108조 제 5호와 법 제 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면적 또는 철거의 년월일,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 구조, 종별,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선박, 차량과 증기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 시설가액, 취득 및 설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토지의 면적 및 짓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

년월일을 기재하고 자복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제 17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자로 보는 파점주주는 당해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년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 1 항 각호의 해당사항
6. 과세표준액과 과세표준액 산출 근거 기타 참고사항

제 21 조(광산용 입목 취득의 면세 신청) 법 제 108 조 제 7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재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 설

정자 또는 광산 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물건의 소재지
3. 취득 년월일, 벌채허가 년월일 및 벌채기간
4. 주동, 주령, 주수, 축적량(재적)
5. 기타 참고 사항

제 3 절 자동차 세

제 22 조(납세의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 23 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 세의 세액은 별표 제 1 호에 의 한다.

제 24 조(납부) ①자동차세는 1 대당 납세액을 4 분의 1 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 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자동차등록 소재지인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 분	1 월부터 3 월 까지	3 월 1 일부터 3 월 15 일 까지
제 2 기 분	4 월부터 6 월 까지	6 월 1 일부터 6 월 15 일 까지
제 3 기 분	7 월부터 9 월 까지	9 월 1 일부터 9 월 15 일 까지
제 4 기 분	10 월부터 12 월 까지	12 월 1 일부터 12 월 15 일 까지

② 구청장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와 함께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납기개시후에 원시취득한 차 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차에 대하여는 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그 기분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신고의무) ①법 제 132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

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년호,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

3. 정치장

4. 자동차의 등록번호

5.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배기량, 기통수, 축간거리

6. 취득하였을 때에는 취득가격

7. 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

8. 기타 참고사항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제취득으로 인한 신고일 때에는 그 자동차의 전 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절 유 흥 음 식 세

제 26 조 (납세의무자등) 유흥음식세는 법 제 139 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이하 "유흥음식장소"라 한다)에서 유흥음식과 숙박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영수한 또는 영수할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제 27 조 (세율) 유흥음식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 1종장소 요금의 100분의 20

제 2종장소 요금의 100분의 10

제 3종장소 요금의 100분의 5

제 28 조 (특별징수의무) ①유흥음식세는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하여 법 제 139 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과 숙박의 행위를 할 때마다 즉시 부과징수 시킨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흥음식세의 징수에 있어서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유흥음식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

제 29 조 (신고납입) ①유흥음식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유흥음식세에 관한 행위인원과 과세표준액 및 세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그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폐지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폐지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유흥음식세를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③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유흥음식장소를 번번히 이동하거나 임시적으로 경영하여 유흥음식세를 포탈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유흥음식세에 관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수시로 신고 납입시킨 경우에는 그 뜻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0 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유흥음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 384 호

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홍음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가산세액등의 징수) (1)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유홍음식세는 그 납부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2)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것을 유홍음식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32 조 (납세담보) 법 제 1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 1 종 장소의 경영자는 그 경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 1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3 조 (개폐업 및 휴업신고) (1) 유홍음식장소를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보

1973.7.5 35-13

경영개시전 5일까지 경영장소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주소, 서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영업의 종류, 상호와 소재지
3. 종업원의 구분과 인원
4. 요금의 종별과 금액
5. 경영장소의 구조 기타 설비의 개요

6. 경영개시 년월일

7. 기타 참고사항

(2) 전항의 신고를 펼한자가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특별징수의무자가 유홍음식장소의 경영을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기, 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휴업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제 1 항의 경영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다.

(5) 유홍음식장소의 경영을 승계하는자는 피승계자와 연서하여 승계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유홍음식장소의 경영을 상속한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할 법인이 경영하던 유홍음식장소의 경영을 승계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유홍음식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1. 유홍음식행위의 년월일
2. 유홍음식행위의 수
3. 유홍음식요금의 종류별, 세율별
금액과 유홍음식세액
4. 조제한 요금 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요금영수증의 매수와 조
제 및 교부년월일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자로 하여금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 유홍음식장소의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35조(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요구 등) ①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발횟수의 계산은 3월간을 1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 제147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1회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3일간의 영업의 정지처분
2. 전호의 사실을 2회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5일간의 영업의 정지처분

3. 전 1호의 사실을 3회 적발하거나 별 제 147 조의 2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1회 발생한 경우에는 10일간의 영업의 정지처분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이 규정에 의하여 혈가 취소요구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 147 조의 2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4회이상 적발되었을때

2. 법 제 147 조의 2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이상 발생한때

(4) 법 제 147 조의 2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실과 동조동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합한 때에 있어서의 영업정지처분은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실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일수를 각각 합산한다.

제 5 절 도 축 세

제 36 조 (납세의무자) 도축세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시장이

조사결정한 식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 돼지의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 37 조 (세율) 도축세의 세율을 다음과 구분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 가액의 1,000분의 4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 가액의 1,000분의 7

제 38 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내의 날 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39 조 (특별징수의무) ① 도축세는 도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 한다.

② 소, 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

제 40 조 (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 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끝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살장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 41 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2 조 (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도축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 무자로 부터 징수한다.

②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 43 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 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 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액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 경영자로 하여금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장 경영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칠 마 권 세

제 44조 (납세의무자) 마권세는 경마를 할때마다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 45조 (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투표권의 판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 46조 (징수) 마권세는 관할 구청장이 징수한다.

제 47조 (신고의무) ①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승마투표권의 판매에 의

하여 얻은 금액과 그 해당 세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구청장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48조 (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전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마권세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한국마사회로 부터 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마권세액으로 하여 한국마사회로 부터 징수한다.

제 49조 (납부) 한국마사회는 경마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그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을 관할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51조 (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하여 각 경마마다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비치 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 방법의 종류 및 승마 투표권의 권면 금액별로 판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 155조의 마권세액

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 금액별의 승마투표 적중수

4.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

제 51조 (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 종료후 즉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 방법의 종류 및 승마

투표권의 권면 금액별로 판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승마투표권의 권면 금액별로 승마투표 적중수

3.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제 52조 (교부금) 법 제 159조 및 형제 122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납부한 월의 익월 10까지 관할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 7절 면허 세

제 53조 (납세의무자등) 면허세는 법 제 161조에서 규정하는 각종의 면허를 받은자에게 부과한다.

제 54조 (과세 표준과 세율) 면허세의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 1종 18,000원

제 2종 14,400원

제 3종 10,800원

제 4종 7,200원

제 5종 4,800원

제 6종 2,400원

제 55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 면허에

대한 비과세 신청) ①법 제 163 조 및 제 163 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6 조 (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경신 또는 면허의 경신으로 보는 제 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매년분을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제 8 절 재 산 세

제 57 조 (납세의 무자)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 계기한 자에게 부과한다.

1. 토지 - 납기개시일 현재로 토지과세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를 분배 또는 매각을 받은자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

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국, 도, 시, 군, 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를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지상권자) 다만 토지과세 대장에 등록된 자가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 등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또는 환지교부 예정자

2. 가옥 - 납기개시일 현재로 가옥과세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 소유자)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가옥을 매각하거나 국, 도, 시, 군, 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가옥을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

3. 광구 - 납기개시일 현재로 광구과세 대장에 등록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다만, 광업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는 그 경영에 속하는 광업권에 대한 것은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 국유광업권으로서

본부연납의 방법으로 매각한 것은 제 59 조 (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매각계약일로부터 그 매수자
4. 선박-납기개시일 현재로 선박과
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
실지 소유자)

제 58 조 (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통
지) ①법 제 18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은 재산이 재산
세의 면제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
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
체없이 그 재산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수량, 톤수,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구청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
지를 받았거나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
에는 자체없이 재산세대장을 정리하
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 59 조 (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일반재산
 - (1) 토지 1,000 분의 2
 - (2) 가옥 (주택제외) 선박 1,000 분의 3
2. 사치성 재산
 - (1) 면장 (토지제외) 1,000 분의 6
 - (2) 골프장 (건물제외) 1,000 분의 4
3. 법인의 비영무용 토지 1,000 분의 4
4. 주택,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
로 구분하여 차차로 각 세율을
적용한다.
 - (1) 건물 2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 분의 3
 - (2) 건물 3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 분의 4
 - (3) 건물 5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 분의 5
 - (4) 건물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 분의 6

5. 광구 1 헥타르당 30원,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서울특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날기일로부터 5년간 전항에 규정한 서울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 60 조 (납기) ①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징수한다.

기별	과세 대장	납기
제 1 기	가옥, 선박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제 2 기	토지, 광구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② 납기 개시일 현재로 과세대상이 된 토지, 가옥등의 과세 객체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불이행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과누락된 재산세의 납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 61 조 (토지에 관한 신고) 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범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주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를 주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게 된 때에는 전항의 예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62 조 (가옥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가옥의 소재, 종별, 용도,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 부터 2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옥을 신축, 증축, 이축 또는 개축한 때
2. 가옥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업계, 되었을 때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2 이상의 구를 결치는 때에는 광구의 면적이 많은 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구가 서울특별시와 인접 도에 결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와 도의 광구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 비파세 가옥이 파세 가옥으로 된 때	제 64 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용도, 톤수, 취득가격, 파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파세가옥이 비파세 가옥으로 된 때	1. 선박을 취득한 때
5. 가옥의 구조, 종류, 또는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면적을 증감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6. 가옥을 양도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 63 조 (광구에 관한 신고의무) ① 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파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 또는 사실상으로 휴광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 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휴광기간, 시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시내에서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 소멸, 이동 또는 휴광년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비파세 선박이 파세 선박으로 된 때
	제 65 조 (재산세 파세대장에의 직권 등재) 납세의무자가 제 61 조 내지 제 64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절 농 지 세

제 66 조 (납세 의무자 등) ① 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다만, 그 토지를 타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당해경작자) 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은자에게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가 당해 농지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경작자의 소재불명으로 당해 농지세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제 2 차 납세 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법제 1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7 조 (농지소재지등의 신고) 령제 151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에 관한 신고는 성명, 주

소, 농지의 소재지, 치목,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개시 30 일 전에 농지소재지 판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8 조 (기초공제 및 소액불징수)

① 갑류에 있어서는 법제 211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서 수확량 2.5 키로리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공제한다.

② 을류에 있어서는 법제 211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매기 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금액 8천원을 기초공제한다.

③ 2 이상의 구에 걸쳐 농지를 경작할 때에는 형제 164 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준수입금액,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농지세액이 50 원 미만인 때에는 농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69 조 (세율) ① 농지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갑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6

2. [율류] 각기별 과세표준금액

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세차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1) 6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10

(2)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3)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2) 전항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호적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주된 납세의무자의 기준수입금액을 각각 합산한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 70 조 (이동지의 신고) ①법 제 2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

번, 지목, 지적, 작물의 종류와 과세지역 또는 비과세지역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전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지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관제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 71 조 (정기분 소득금액신고 및 통지) ①법 제 2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율류해당 농지 전부에 대하여 각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작물의 종류, 각기종의 소득금액, 소득산출의 기초와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 개시전 20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2 조 (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 500 원

2. 여비 300 원

제 73 조 (납기 등) ①농지세의 납기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잡류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1월 20일부터 12월 말 일 까지로 할 수 있다.

2. 을 류 제 1기 9월 1일부터 9월 말 일 까지

제 2기 12월 1일부터 12월 말 일 까지

(2) 법 제 2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 징수 하는 농지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물의 수확이 완료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 74 조 (자력 상실·감면 등)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로 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75 조 (보조금의 교부) ① 제 18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를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한다.

1. ① 제 18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징수한 세액의 100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한다.

다만 징수세액을 악월 10일 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징수의무를 줄이 행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흥구서를 징수세액을 납입한 달의 말일 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목적 세

제 1절 도시계획세

제 76 조 (정의)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 77 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설부장관이 결정고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가옥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 78 조 (납세 관리인의 지정) 구청장은 도시계획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가옥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인을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79 조 (토지 및 가옥의 범위)

제 77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가옥은 납기 개시일 현재에 있어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확정공시된 도로 또는 철거대상 가옥부분은 제외한다.

1. 토지 - 법 제 180 조 제 1 호 및
령 제 195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토지

2. 가옥 - 법 제 180 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가옥.

제 80 조 (과세 표준) ① 도시 계획세의
과세 표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가옥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
은 납기 개시일 현재 시행되는 법
제 111 조 제 2 항 단서 및령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징가표준
액에 의한다.

제 81 조 (세율) 도시 계획세의 세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 분의 2로 한다.

제 82 조 (부과구역 등의 공고) 시장

은 도시 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을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년 3월 1 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 83 조 (비과세) 법 제 183 조 및
제 184 조의 규정 또는 조세 감면
규제법, 제 9 조의 규정은 도시 계획
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 84 조 (면세점) 법 제 18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가옥에 대하여
는 도시 계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제 85 조 (감면) ①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하
게 자력을 상실하므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 계
획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
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관할 구
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제 86 조 (납기) ① 도시계획세는 다음 납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

기 별	파 세 대 상	납 기
제 1 기	가 옥	4 월 1 일부터 4 월 말 일 까지
제 2 기	토 지	9 월 1 일부터 9 월 말 일 까지

② 납기개시일 현재로 파세대상이 된 토지, 가옥 등의 파세 객체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불이행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과 누락된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87 조 (징수) ② 도시계획세의 징수는 재산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파세표준액, 세율, 세액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 일 전에 발부한다. 다만 도시계획세의 납기가 재산세의 납기와 같을 때에는 그 기재사항을 재산세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 88 조 (신고의무) 도시계획세의 파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거나 파세대

상의 경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 제 61 조 대지 제 62 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적권 등재는 이 조례 제 6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 89 조 (파세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도시계획세의 파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세 파세대장에 그 내용을 병기하여 겸용할 수 있다.

제 2 절 소방공동시설체

제 90 조 (납세 의무자) 소방공동시설

제 91 조 (과세표준 및 세율) 소방 공동시설세는 법 제 111 조 제 2 항 단서 및 령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세에 이를 준용한다 .
5백만원 이하의 가액 1,000 분의 0.6	제 93 조 (납기 및 납세고지) 소방공동시설세의 납기는 가액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로 하고 세액의 고지는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말부하여야 한다 . 다만 , 특히 필요할 때에는 납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 및 15일간의 납기를 기재하여 납기까지 10일전에 고지한다 .
1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 분의 0.8	제 94 조 (징수) 소방공동시설세의 징수방법은 재산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2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 분의 1.0	제 95 조 (면세점) 법 제 1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 분의 1.2	제 96 조 (감면) 법 제 195 조의 규정은 소방공동시설세에 준용한다 . 이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절차는 재산세의 감면절차에 준한다 .
5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 분의 1.4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 분의 1.6	부 칙
제 92 조 (비과세) 법 제 183 조 및 제 184 조의 규정과 조세감면 규제 법 제 9 조의 규정은 소방공동시설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 2593 호 ,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p> <p>②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p>

제 384 호 시 보 1973.7.5. 35-29

688호 서울특별시세조례, 동조례제 68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세조례 및 동조례 제 524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지설세 조례는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지한다.
---	---------------------------------------

별표제 1 호

차 둘 차 세 액 표

1. 승용자동차 (4기통초과)

등급	축 간 거리	1 대 당 년 세 액	
		영업용	비영업용
1	275 센티미터 이상	84,000 원	660,000 원
	275 센티미터 미만	40,000 원	320,000 원
2	275 센티미터 이상	67,200 원	528,000 원
	275 센티미터 미만	32,000 원	256,000 원

2. 소형승용자동차 (4기통이하)

등급	배기량	1 대당 년 세 액	
		영업용	비영업용
1	1,400 씨씨 초과	30,400 원	166,400 원
	1,000 씨씨 초과	26,000 원	115,200 원
2	1,000 씨씨 이하	21,200 원	64,000 원
	1,400 씨씨 초과	24,400 원	133,200 원
2	1,000 씨씨 초과	20,800 원	92,400 원
	1,000 씨씨 이하	16,800 원	51,200 원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등급	기통수	1 대당 년 세 액	
		영업용	비영업용
1	4기통 이상	20,960 원	64,000 원
2	4기통 미만	16,800 원	51,200 원

35-30 제 384 호 시 보 1973.7.5.

4. 총합 자동차

등급	정원		1 대당 년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	30인	이하	11,360 원	18,240 원
2	40인	이하	13,760 원	21,920 원
3	50인	이하	16,480 원	26,400 원
4	60인	이하	18,720 원	30,400 원
5	61인	이상	23,360 원	38,560 원

5. 합승 자동차

등급	승차정원	1 대당 년 세액
1	16인 초과	25,600 원
2	16인 이하	20,000 원

6. 화물자동차

등급	화물 적재량	1 대당 년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	1,000 키로그램이하	3,040 원	6,240 원
2	2,000 키로그램이하	4,320 원	7,680 원
3	3,000 키로그램이하	5,920 원	10,720 원
4	4,000 키로그램이하	8,000 원	14,080 원
5	5,000 키로그램이하	9,920 원	17,600 원
6	8,000 키로그램이하	16,160 원	29,120 원
7	8,000 키로그램초과	17,920 원	32,640 원

7. 특수자동차

등급	구분	1 대당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	대형 특수자동차	16,000 원	34,960 원
2	소형 특수자동차	5,920 원	12,880 원

8. 3륜이하 소형자동차

등급	종류	1 대당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	3륜 승용차	2,720 원	8,000 원
2	3륜 화물차	2,080 원	3,840 원
3	2륜 (대형)	1,440 원	4,000 원
4	2륜 (소형)	720 원	1,920 원

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110호

도시계획학교(중·고등학교 및 전문학교)시설결정과 지적승인

1. 도시계획학교 시설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

가. 학교 시설 조서

구분	위치	시설	면적	비고
중·고등학교	김포지구 312구획	12,150 m ²	(3,500평)	국민학교 시설용지 변경
간호전문학교	서대문구 흥제동 287-89	4,220 m ²	(1,279평)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1973. 6. 3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고시제 111호

도시계획시장설정과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제12조와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호(73.4.4)에 의

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1973. 6.3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장시설조서

순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1	시장(백화점)	영등포구화곡동 373-15의 15필지	1,943 m ²	화곡제 1
2	시장	동대문구 휘경동 322-13의 62필지	1,557 m ²	휘경현대상가

별첨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서울특별시 고시제 112호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주차장)의 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

고시제 123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3. 7. 2.

서울특별시장

2. 시설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시내버스주차장	영등포구목동 404-3	2,807 m ²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사령

(◎ 1973. 7. 1.

서기관 박수복

시장실근무를 명함.

단, 도시새마을 연구담당관을
명함.성북구 지방행정 이한봉
동부병원 서무과장에 보함.영등포구 지방행정 김언배
보진소 사무판 남부병원 서무과장에 보함.녹지과(공지방농림 이능성
원관리계장) 기좌 녹지과
방조리계장에 보함.녹지과(공지방농림
원개발계장) 기좌
공원과공원 관리계장에 보함.남산공원 관리사무소장 기좌
이회봉
녹지과 보호계장에 보함.양묘장장경남 지방농림 김영환
부녹지사업소장 기좌 남부녹지사업소장 겸직을 명함.시설과(공지방토목 설진성
업용수계장) 기좌 시설과공무제 1계장에 보함.시설과(공토목계장) 기좌
설진성
시설과공무제 2계장에 보함.공무원교육원 전기기좌 김상운
운동장근무를 명함.운수행정과 기계기좌 황한균
운수제3과 정비계장에 보함.공원과 농림기좌 강정성
녹지국공원과장 직무대리를
명함.지하철건설 지방기계 김병진
본부 기사 지하철건설본부

운수과운전계 장직무대리를 명함.

지하철건설본부
부계획조사과 지방건축 이원무
(건축제작기사
무대리)

지하철건설본부

공무과건축계 장직무대리를 명함.

지하철건설본부
부공차전기과 기사 배인곤
지하철건설본부

전차과겸수계 장직무대리를 명함.

개량과(단지조성계장
직무대리) 지방토목 전동진
개량제1과 단지조성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총무과 지방기계보조 장우진
지방전기기원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사정과근무를 명함.

양묘장기자 이강윤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직무
대리를 명함.

녹 지 과 지방농림 기 기자	박 용 재	도시가스사업소 지방기계 기 기원 최완종
남부녹지사업소장직무대리를 명함.		중기관리사업소근무를 명함.
양묘장 주 행정	김 수 원	구의수원지 지방화공 사 무 소 기 사 보 송용기
동대문구 녹지과장직무대리를 명함.		보광동수원지사무소 파견근무 를 해제함.
영등포구 주 행정	김 울 희	구의수원지 지방화공 사 무 소 기 원 장원수
수원읍당관실근무를 명함.		보광동수원지사무소 파견근무 를 해제함.
용산구 주 행정	이 항 재	영등포수원지 지방화공 사 무 소 기 원 노병일
영등포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보광동수원지사무소 파견근무 를 해제함.
예산과 주 행정	조 학 래	구의수원지 지방화공 사 무 소 기 원 김윤용
도봉구근무를 명함.		보광동수원지사무소 파견근무 를 해제함.
운수행정과 기계기사	강 무 봉	신재영
운수제3파근무를 명함.		지방서기관에 임함.
운수행정과 기계기사보	이 수 부	6호봉을 급함.
운수제3파근무를 명함.		한경국 청소제2과장에 보함.
아동병원 지방간호	김 원 배	경기도고양군 지방농림 기 기원 이종우
서대문구보전소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아동병원 지방보건기 사보(X선)	박 원 흠	지방농림기원에 임함.
영등포병원근무를 명함.		5호봉을 급함.
용산구 지방지적 기 사 보	송 오 복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근무를 명함.		경기도고양군 지방행정 서 기 보 이종근
도시계획과 지방토목 기 사 보	김 남 혼	
구회정리2파근무를 명함.		
마포병원 지방간호	김 영 자	
영등포병원근무를 명함.		

제 384 호

시

보

1973.7.5.

35-35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경기도고양군 지방행정
서기보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경기도고양군 지방행정
서기보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상공과장 사무판

영등포구총무과장에 보함.

성북구 지방행정
서기보

성북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
서기보

시내문구근무를 명함.

경기도고양군 지방행정
주사보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경기도고양군 지방행정
서기보 김영삼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경기도고양군 지방행정
서기보 홍기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 1973. 7. 3.

조세운

용산구 지방행정
총무과장 사무판 김희수

서울고등법원(72구 278호)

판결에 의하여 1972.5.23자

발령 257호 결책처분을 동일

차로 취소함.

◎ 1973. 7. 5.

곽태영

지방건축기원보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35-36 제384호

시 보

1973.7.5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한 인 수

지방전축기원보 시보에 임함.

◎ 1973. 7. 10.

1호봉을 급함.

춘천교도소 전축기원 은종석

도봉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전임을 명함.

지방전축기사보 시보에 임함.

김완규
지방전축기원에 임함.

1호봉을 급함.

2호봉을 급함.

성북구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1794

317